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56호 2011. 11. 7.(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5호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6호 인천광역시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1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8호 석남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9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 3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 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공촌지구 소3-4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35호 공시 송달 공고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5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 5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16호

인천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법정적립총액 100분의 15 이상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중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제6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제7호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제8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사업, 제9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구입 또는 임대, 제10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11호 재해원인분석, 침수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제12호 재난·재해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제13호 영 제74조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총 소요금액의 70%이하" 를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을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설날·추석 연휴”를 “설날·추석 당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장애인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등의 전용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② 장애인등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등의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

야 한다.

2. 주차장 다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대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 (제17조의2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3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8호

석남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의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29호(2009.10.26)로 결정한 석남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기정	117	주택재개발	석남1구역	석남동 529번지 일원	55,818	200	60	2	학교 필요권역
변경	117	주택재개발	석남1구역	석남동 529번지 일원	55,792.9 (감 25.1, 0.04%)	200	60	2	학교 필요권역

※ 변경사유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참조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구 구분	사업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55,818	감) 25.1	55,792.9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구 구분	위 치	면적(m ²)	변경 사유
변경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55,7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8.6m²) 및 구역내 일부 토지 제척(16.5m²)에 따른 면적 감소 ※ 인접 종교시설(인천대은교회)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진출 입을 위해 면적 16.5m²의 일부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5,818	감)25.1	55,792.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18	감)25.1	55,792.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7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8.6m²) 및 구역내 일부 토지(16.5m²)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3	석남동 중1-27~광2-1	일반미관지구	대1-11	9,900	660	편측 15m	인고 제109호 (1999.9.9)	
기정	67	석남동 중1-27~광2-1	일반미관지구	중1-43	20,100	670	양측 15m	인고 제109호 (1999.9.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16	18~23	국지 도로	334	대 1-11	중 1-4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95	중 1-27	소 2-18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81	8	국지 도로	50	석남동 537-26	중 1-5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82	6~9	국지 도로	273	중 2-716	중 1-4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12	대 1-11	석남동 533-3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7	석남동 537-10	중 1-4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53	중 1-27	소 2-182	일반 도로	-	-	-

※ 도로편입면적 변경 : [기정 6,675㎡ → 6,683.4㎡, 증)8.4㎡] 개설후 무상귀속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석남동 533-47번지 일원	657	증) 0.3	657.3	09.10.26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변경: 석남동 533-30번지 일원 → 석남동 533-47번지 일원 • 면적변경: 증)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단순 위치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 공 원	석남동 533-13번지 일원	5,806	증) 0.9	5,806.9	09.10.26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②	공원	어린이 공 원	석남동 529-3번지 일원	1,522	증) 0.2	1,522.2	09.10.26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형상 변경 • 면적변경: 증)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위치변경에 따른 시설의 형상 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②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증)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④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석남동 530-9번지 일원	759	감) 0.1	758.9	09.10.26	부지만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감) 0.1㎡	◦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55,818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283	-	-	283	-	
변경		55,792.9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 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기정	석남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55,818	획지1	27,5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이하	240이하 (250이하)	66m이하				
			획지2	11,1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이하	240이하 (250이하)	57m이하				
			획지3	1,188	종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4	454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5	759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6	657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3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회장 또는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5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6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m ² 이하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공공시설부지제공(58.44%) + 공공이용시설확보(1.77%) + 지하주차장확보(10%) - 계획용적률: 24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변경	석남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55,792.9	획지1	27,53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이하	240이하 (250이하)	66m이하				
			획지2	11,18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이하	240이하 (250이하)	57m이하				
			획지3	1,188.0	종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4	453.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5	758.9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6	657.3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3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회장 또는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5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6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m ² 이하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공공시설부지제공(58.62%) + 공공이용시설확보(1.78%) + 지하주차장확보(10%) - 계획용적률: 24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계획	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연출하도록 유도하며, 공원(7,328㎡) 및 공동주택지내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공원면적삭제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연출하도록 유도하며, 공원 및 공동주택지내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재난방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내 비상차량 출입동선(비상차량 출입구)을 계획하여 소방차가 진입 및 진압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공공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면적을 최대한 계획하여,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변경없음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 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써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 등하교시간 주 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②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타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위치	면적(m ²)	
-	-	①	석남동 535번지 일원	27,5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	석남동 529-13번지 일원	11,1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③	석남동 537-25번지 일원	1,188	종교시설
		④	석남동 533번지 일원	454	근린생활시설
		⑤	석남동 530-9번지 일원	759	사회복지시설
		⑥	석남동 533-30번지 일원	657	주차장
		⑦	석남동 533-13번지 일원	5,806	어린이공원①
		⑧	석남동 529-3번지 일원	1,522	어린이공원②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음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위치	면적(m ²)	
-	-	①	석남동 535번지 일원	27,53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	석남동 529-13번지 일원	11,18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③	석남동 537-25번지 일원	1,188.0	종교시설
		④	석남동 533번지 일원	453.9	근린생활시설
		⑤	석남동 530-9번지 일원	758.9	사회복지시설
		⑥	석남동 533-47번지 일원	657.3	주차장
		⑦	석남동 533-13번지 일원	5,806.9	어린이공원①
		⑧	석남동 529-3번지 일원	1,522.2	어린이공원②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주로 저층 단독주택지로 주택지 주변에 소량 분포한 것으로 조사됨 · 보호수 및 고유수종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또한 관상가치가 있거나, 대형목(흉고 직경30cm이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로 매매가 가능할 경우 판매할 예정임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획지1, 획지2)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중로2-716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 변경
-변경사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한 계선 지정(획지1, 획지2)

※ 획지1 건축한계선 선형 변경
-변경사유: 인접대지경계선변경[인천대은교회(537-1번지)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구역내 일부 토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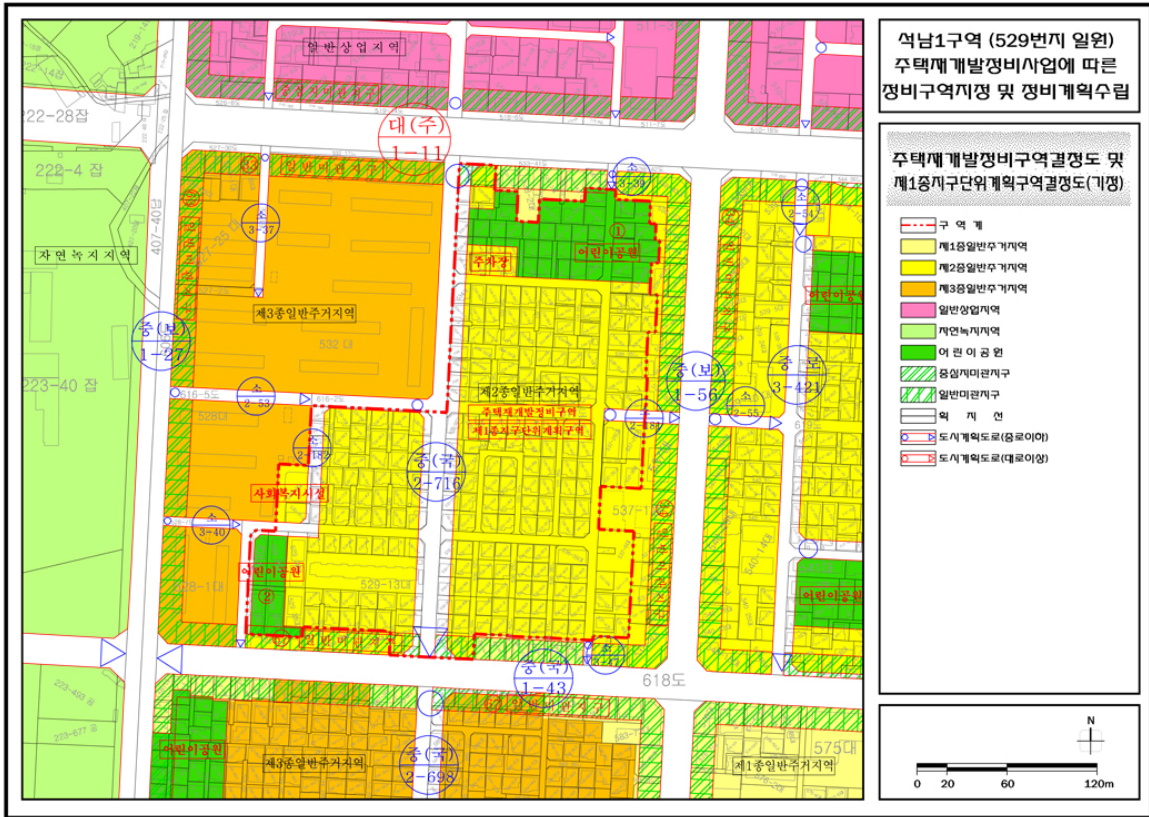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 및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한 순부담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15)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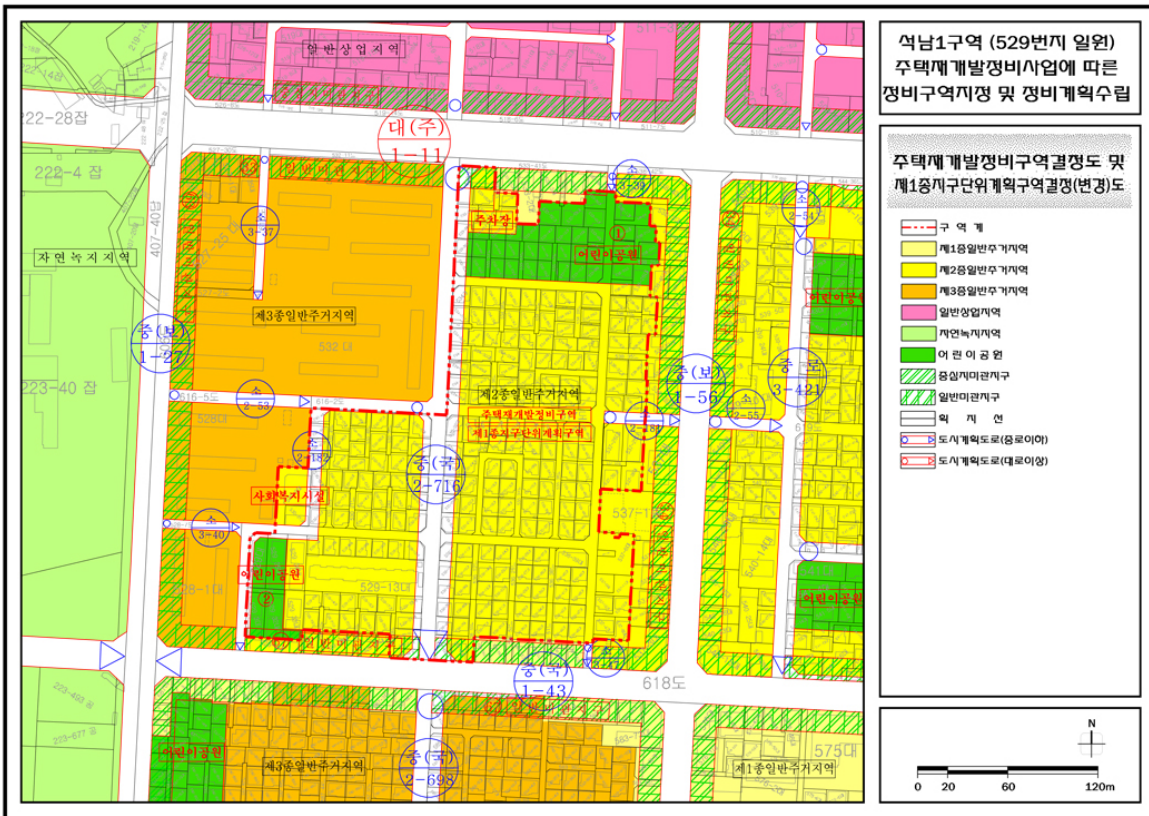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첨부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면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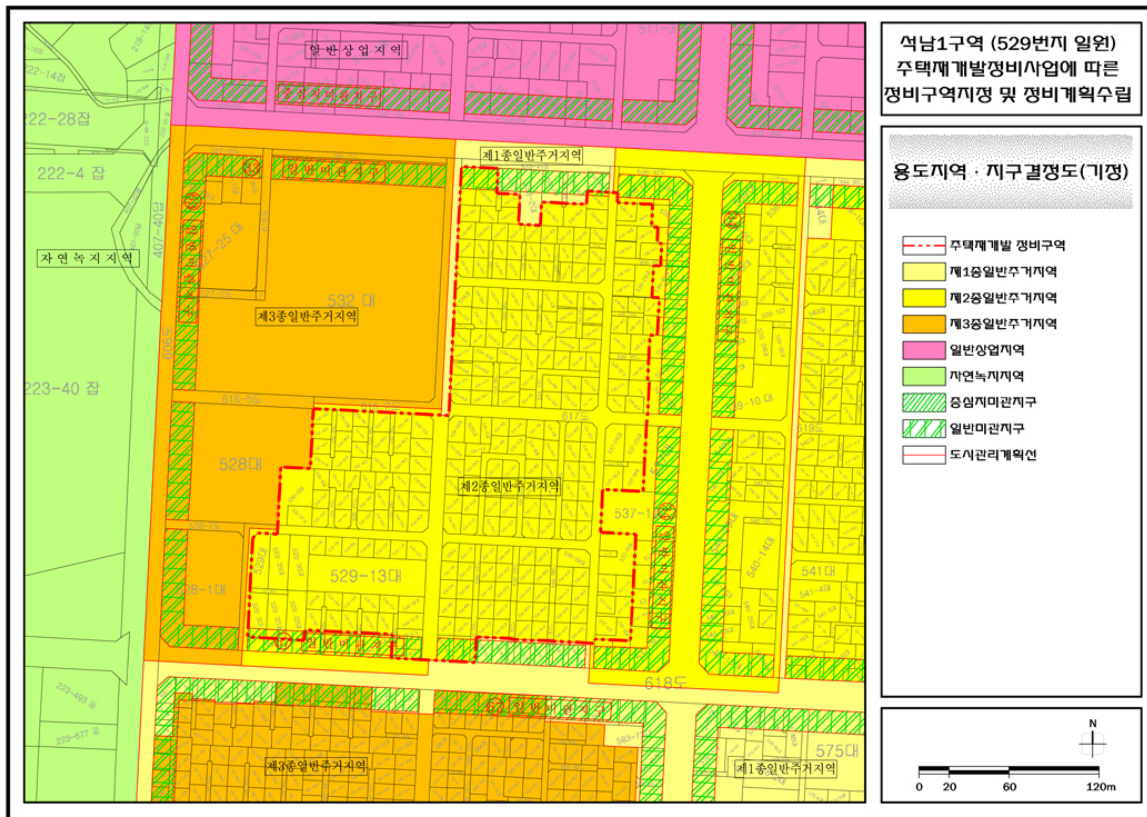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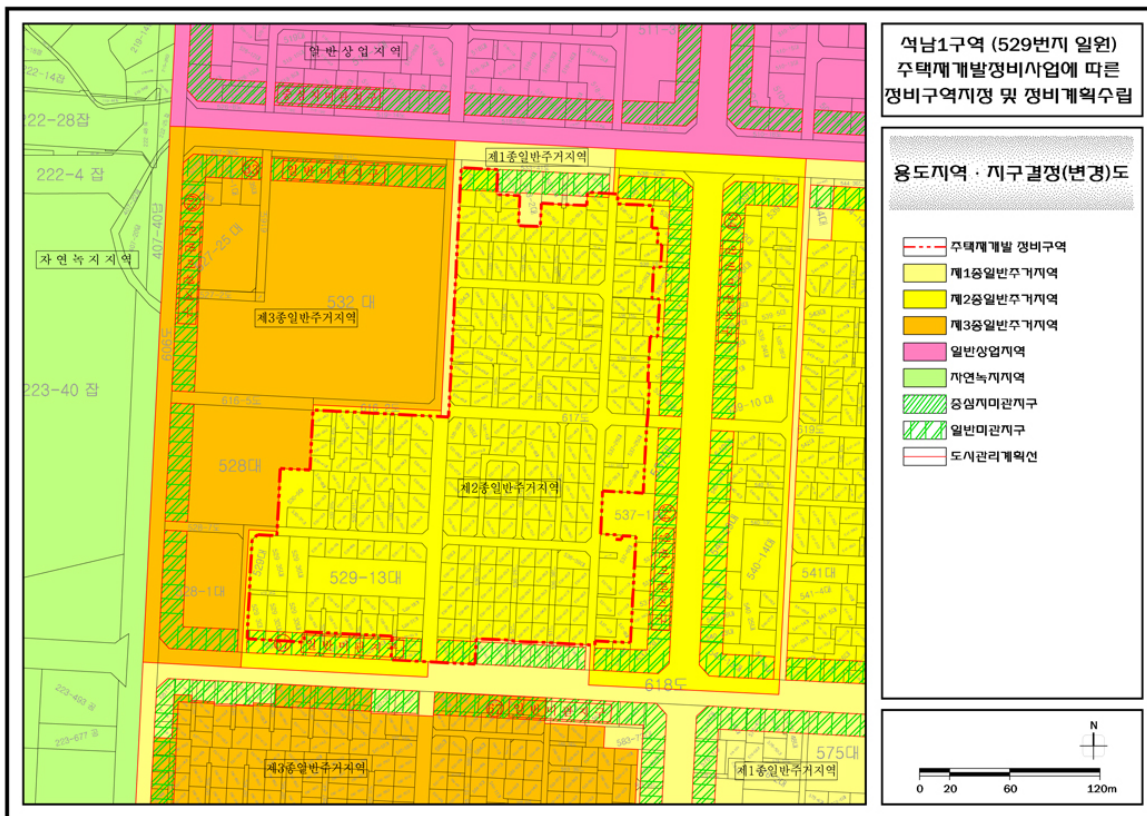


[첨부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면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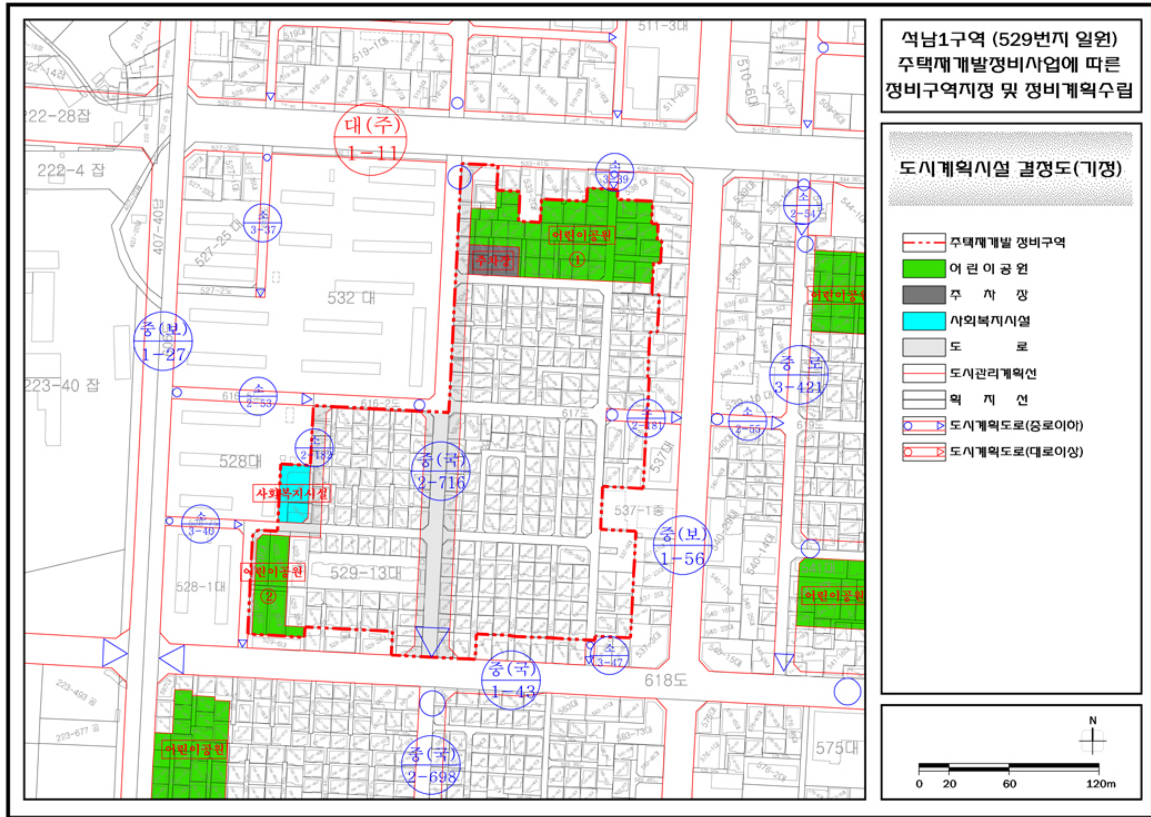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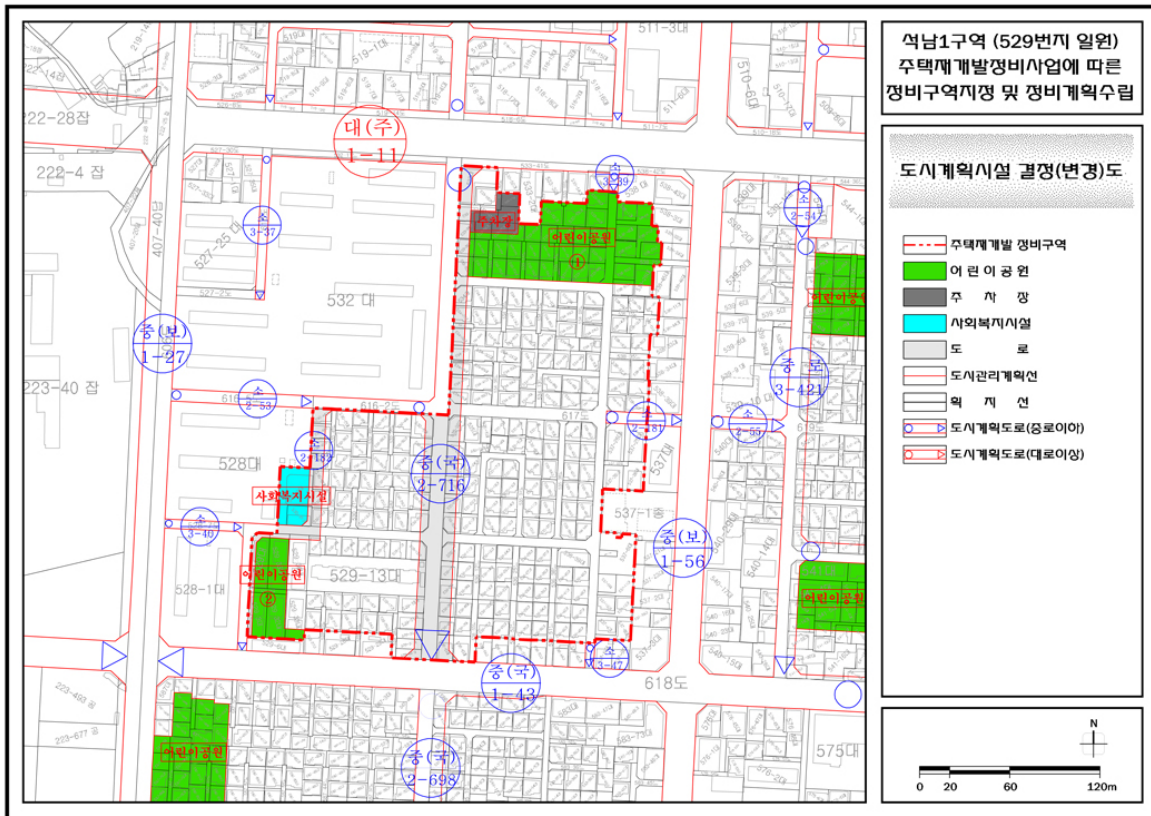


[첨부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면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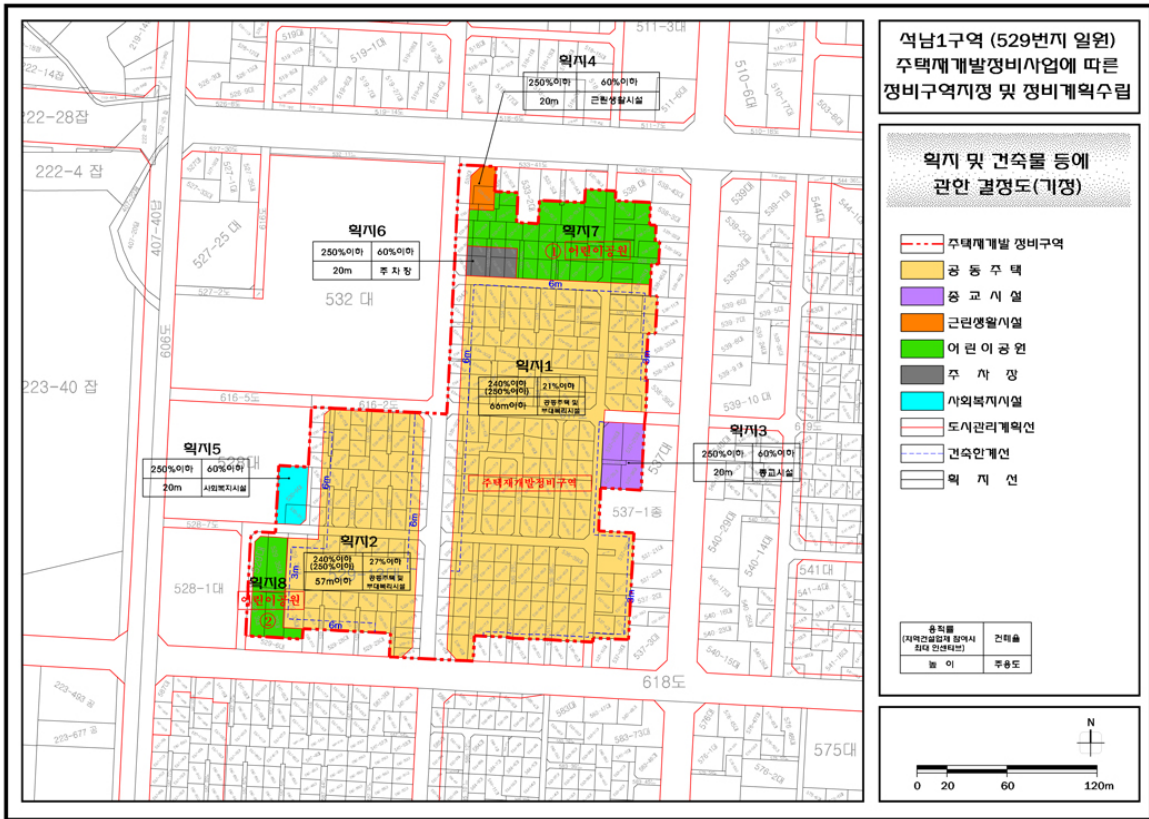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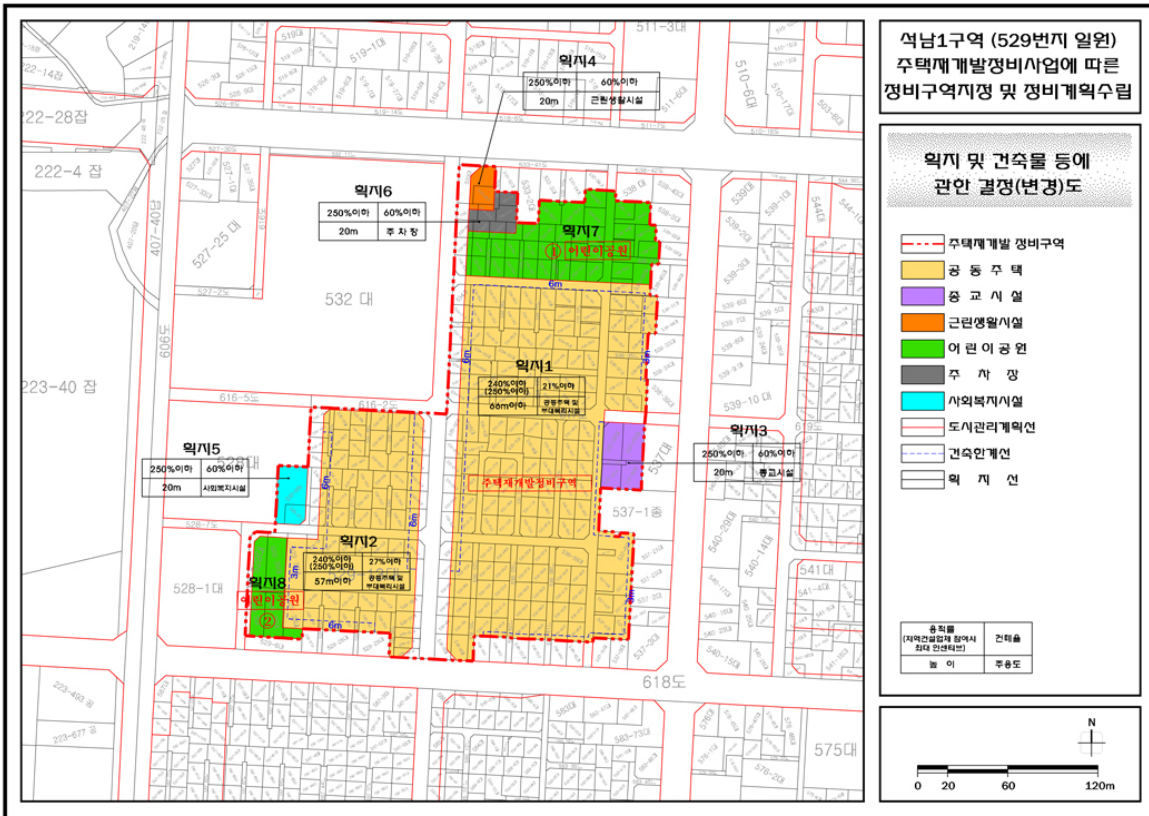


[첨부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도면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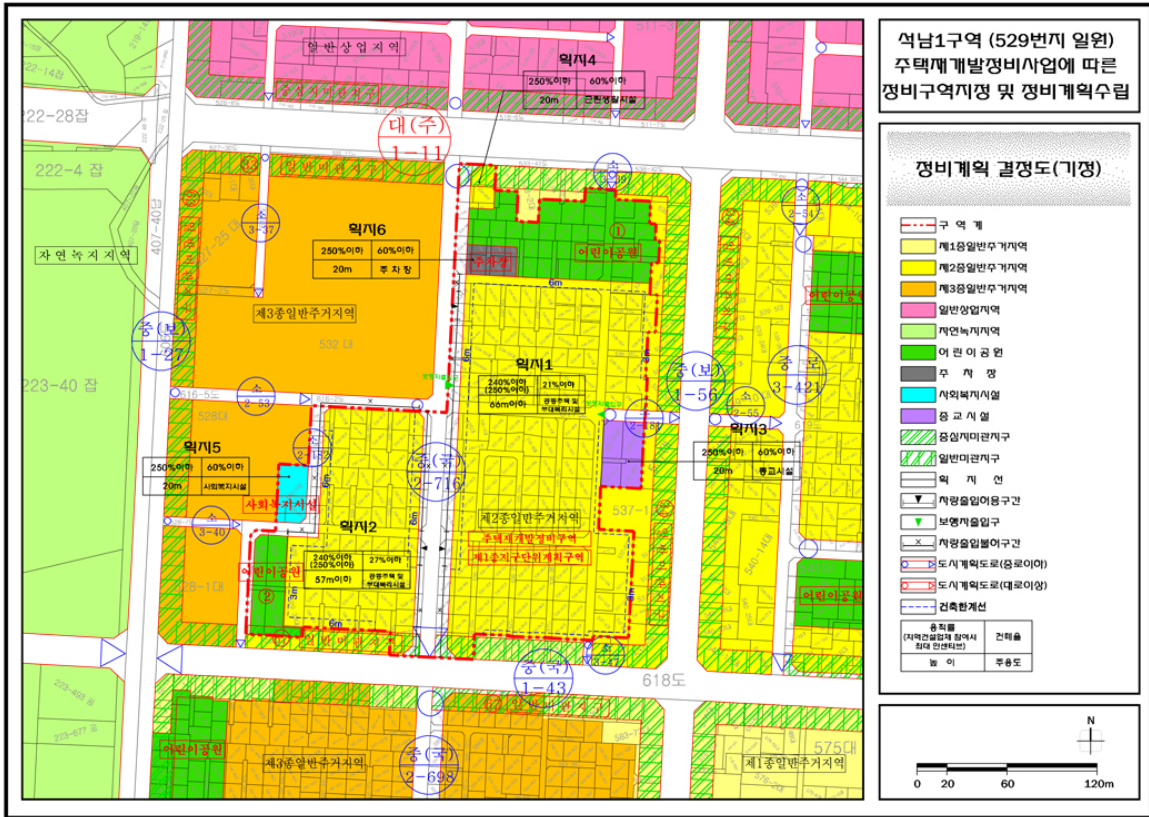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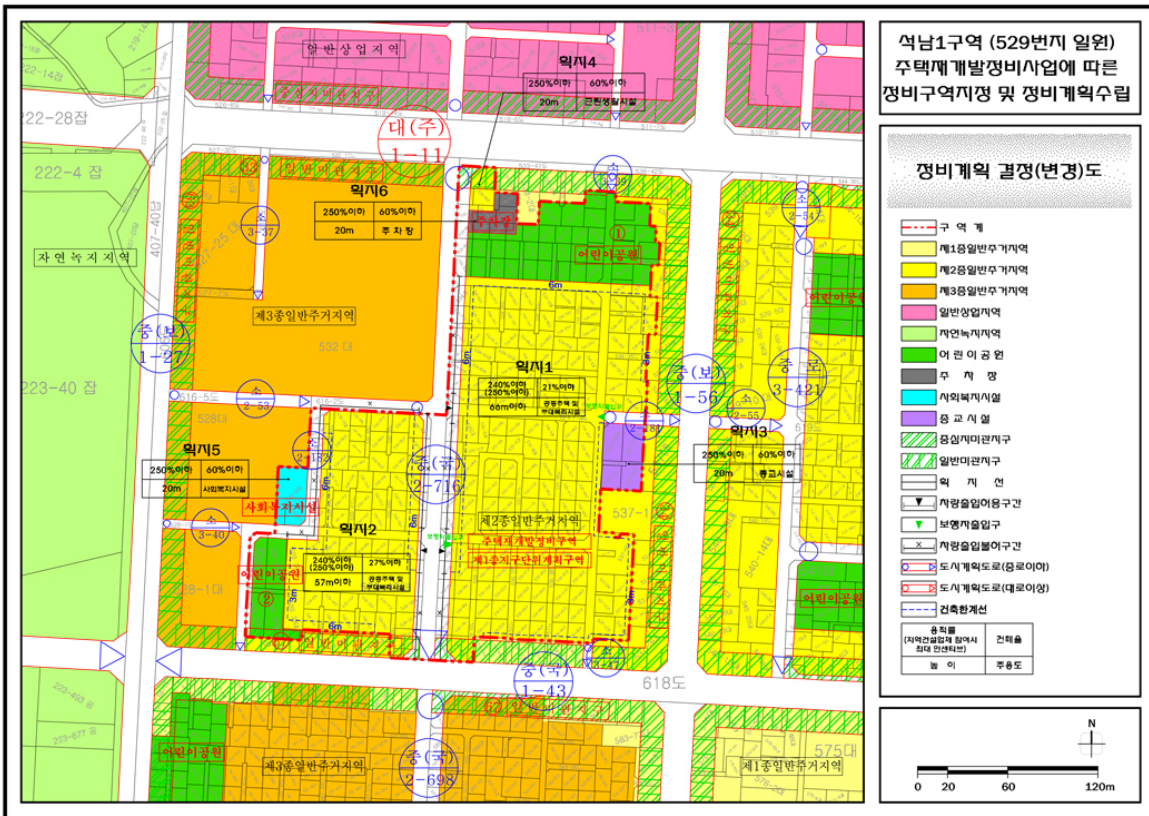


[첨부 5]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면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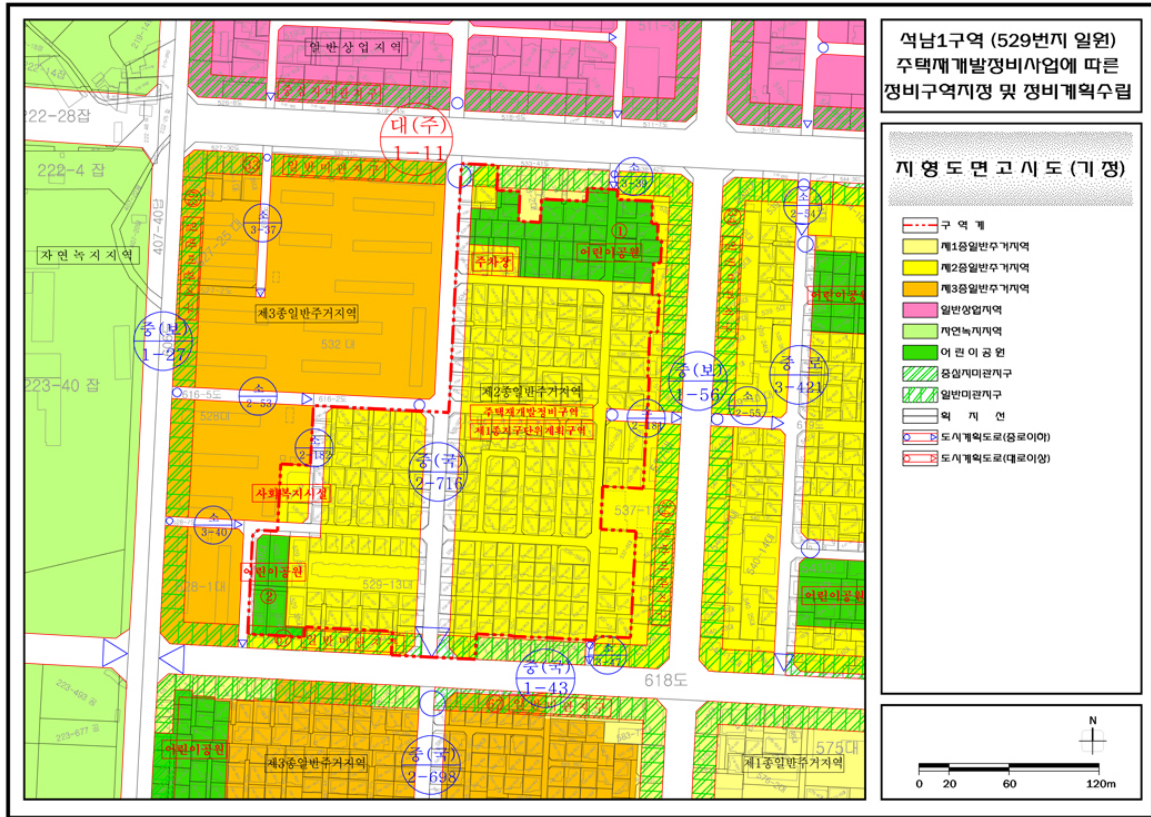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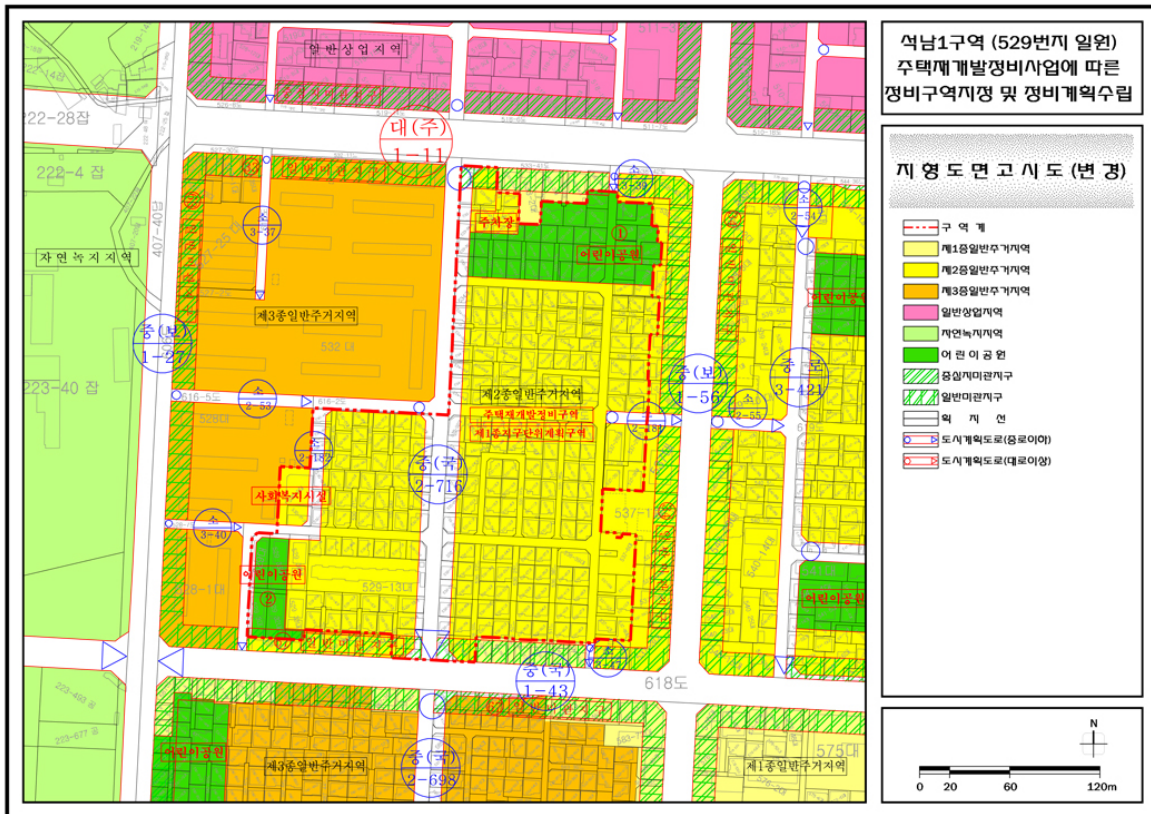


[첨부 6] 지형도면 고시도

○ 기 정



○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9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

도로명	시점	종점	거리 (Km)
23개 도로			164.47 Km
(주요 간선도로)			(주요 간선도로)
장고개길	가재울사거리	가좌동 부평구 경계	2.7
가재울길	북항	가좌2동 범양파크아파트	8.4
원적산길	경인고속도로 경계	가좌동 부평구 경계	5.2
서달산길	건지삼거리	가정동 부평구 경계	6.4
인천대길	가좌1동 동구경계	경인고속도로 경계	1.6
염곡길	가좌1동 동구경계	가정동 봉화로 교차로	9.0
봉수대길	봉수대길사거리	금곡동 서곶길 교차로	27.2
길주로	봉수대길 교차로	원적산터널	3.0
건지공원길	경인고속도로 경계	진주사거리	0.8
중봉로	가좌1동 백범로 교차로	경서삼거리	13.6
백범로	가좌동 중봉로 교차로	가좌동 부평구 경계	8.2
공단중앙2길	가좌동 원적산길 교차로	가좌동 부평구 경계	2.4
열우물길	가재울사거리	가좌동 부평구 경계	2.6
가정로	가좌삼거리	가정동 아나지로 교차로	8.6
검단로	봉수대길 교차로	블로동 김포시 경계	13.6
원당로	봉수대길 교차로	원당동 김포경계	10.8
서곶길	가정동 서달산길 교차로	완정사거리	26.4
경명로	북인천IC입구	연희동 계양구 경계	6.5
승학길	가정5거리	검암4거리	3.3
(연희동)			(연희동)
심곡로	심곡동 염곡길 교차로	연희동 경명로 교차로	2.10
탁옥로	심곡동 염곡길 교차로	심곡동 심곡로 교차로	1.05
대평길	심곡동 염곡길 교차로	서곶길 교차로	0.66
서구청뒷길	승학길 교차로	서곶길 교차로	0.36

2.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

가. 일반적 표시기준

-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2개를 포함 3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기준에 의한다.
- ③ 신축, 개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⑥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나.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

- ① 직접조명 방식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단,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정면 1층부터 5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가로 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건물 최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세로 최대크기는 100cm 이내로 하며,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1층부터 3층까지는 50cm이내, 4층~5층은 60cm 이내로 한다.

[6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해당층수-1) × 5cm + 40cm 이내

- ⑥ 보조표시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보조표기내용은 가로간판 세로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① 돌출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우측 모서리 한 곳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는 1줄만 표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은 도로에 접한 각 건물면의 우측모서리에 각각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3m 이상, 최상단은 건물 10층 창문선 상단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1층부터 5층 사이에 설치하는 돌출 간판은 1면의 면적은 업소당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돌출 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5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10m이내하며, 돌출 폭은 1m 이내로 한다.

마.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1층에 위치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 ② 소형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2m 이상으로, 최상단은 3m 이하에 위치하도록 건물 벽면에 부착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건물별로 통일시킨다.
- ③ 단순한 상호표기는 지양하며,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 ④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같은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으며 같은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1개의 지주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 ①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 ② 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표시기준을 분양(임대)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

- 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설치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

- ② 이 고시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다.
- ③ 이 고시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설치 기준에 의한다.

5.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령에 의해 설치하여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간이 만료되고 본 고시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설치기간을 1회(3년)에 한하여 허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12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61호(2011.10.1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서구 가좌동 30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호선, 사업명:동인천여중 소2-1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 및 건설과(560-4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2.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7-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선)
 - 【명칭】 동인천여중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L = 96.5m, B = 1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11. 01 ~ 201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와 같음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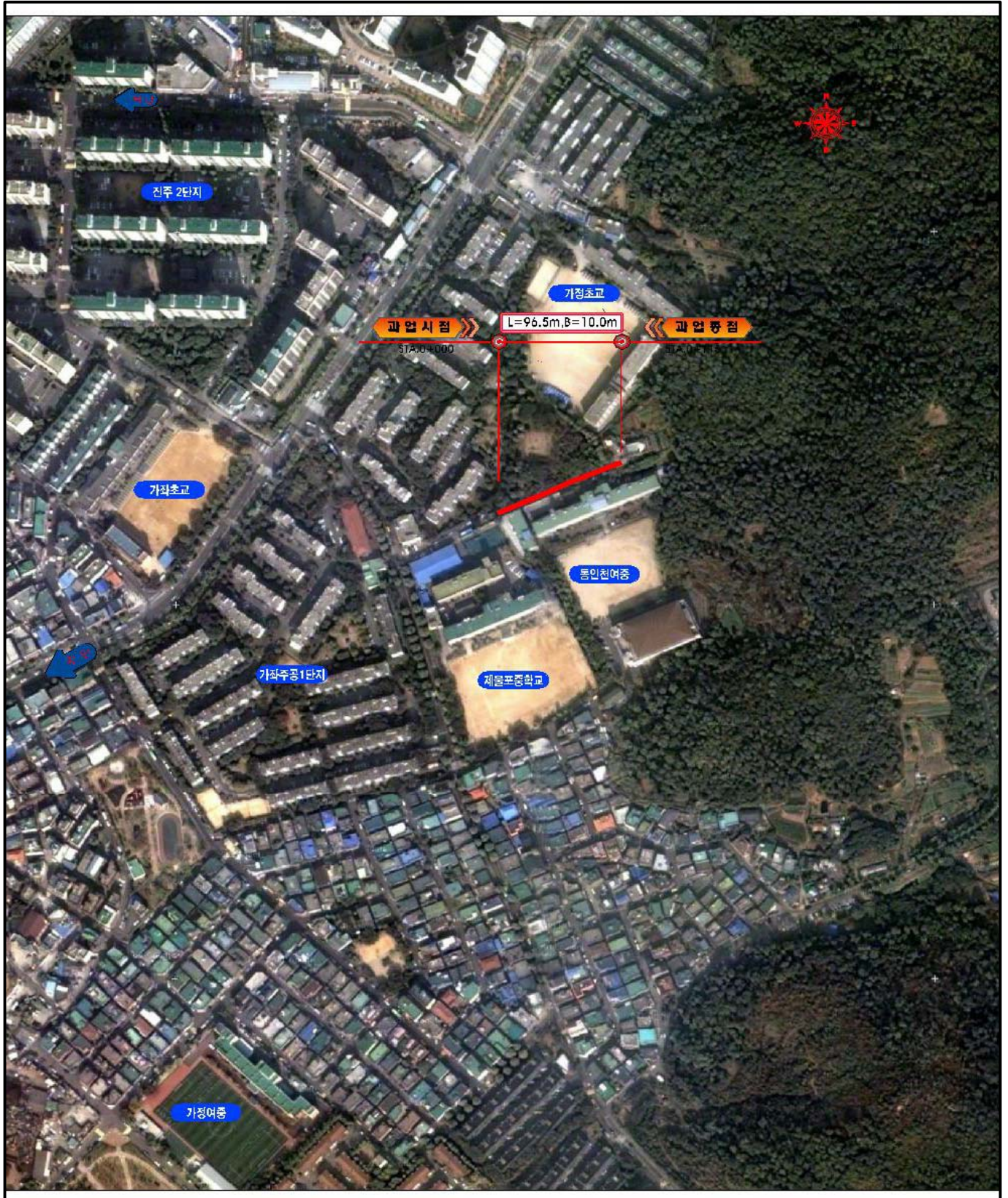
■ 토지 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가좌동 307	공	4667.0	389.0	인천광역시 서구	-	-	-	-	-
2	인천 서구 가좌동 307-1	도	680.6	680.6	인천광역시	-	-	-	-	-

■ 지장물 조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물건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인천 서구 가좌동 307-1번지	체신주	2개	KT	-	-
2	인천 서구 가좌동 307-1번지	한전주	2개	한국전력	-	-
3	인천 서구 가좌동 307-1번지	가로등	2개	인천 서구	-	-
4	인천 서구 가좌동 307	관목	256주	인천 서구	-	-
5	인천 서구 가좌동 307	교목	13주	인천 서구	-	-

위 치 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12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공촌지구 소3-4호선)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48호(2005.04.0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검암동 산77-1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공촌지구 소3-4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1. 1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류4호선)
 - 【명칭】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139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9.9.21 ~ 2011.9.1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11.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개편하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기능직공무원 계급구분: 1급~10급 ⇒ 1급~9급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조례안 별표 1)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조례안 별표 2)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례안 별표 3, 규칙안 별표)
 - 일반직 : 716명 ⇒ 734명(증18명)
 - 기능직 : 83명 ⇒ 65명(△18명)
- ※ 총 정원 803명은 변동사항 없음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404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8명과 8급 10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u>88% 이상</u>	<u>10% 이내</u>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31%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u>11% 이내</u>	<u>44% 이내</u>	<u>39% 이내</u>	<u>6% 이상</u>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40% 이내	13% 이상	10%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80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734</u>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9	22	2	6	1	18
6급 이하 계	<u>679</u>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기능직 계	<u>65</u>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총 계		803	517	18	44	16	43	165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34	481	12	41	16	38	146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9	22	2	5	1	1	18
지방행정사무관		28	12	2				14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약무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59	120	3	7	3	8	18

지방행정주사	80	60	3			1	16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공업주사	3	3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약무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환경주사	4	4					
지방시설주사	13	11				2	
지방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7급 소계	231	160	3	12	6	16	34
지방행정주사보	92	55	3			1	33
지방세무주사보	27	22				5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5	15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1	6		3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5			4	1		
지방환경주사보	8	8					
지방시설주사보	34	29				5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행정·농업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8급 소계	226	145	2	15	5	12	47
지방행정서기	103	65	2	1			35
지방세무서기	11	8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18	8					10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4	4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5	10		3		2	
지방의료기술서기	3			2	1		
지방간호서기	8			5	3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1	25				6	
지방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0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9급 소계	63	30	1	1	1	1	29
지방행정서기보	37	14	1				22
지방세무서기보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8			1			7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8	8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별정직 계	3	3	0	0	0	0	0
6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기능직 계	<u>65</u>	<u>32</u>	6	3	0	5	19
6급 소계	<u>7</u>	<u>7</u>	0	0	0	0	0
지방통신원	<u>1</u>	<u>1</u>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2	2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2	2					
7급 소계	<u>28</u>	<u>9</u>	4	<u>1</u>	0	<u>3</u>	<u>11</u>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u>2</u>	1				<u>1</u>	
지방기계원	2	2					
지방운전원	<u>15</u>	2	1	<u>1</u>		1	<u>10</u>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u>8</u>	<u>3</u>	<u>3</u>			<u>1</u>	<u>1</u>
8급 소계	<u>25</u>	<u>12</u>	<u>2</u>	<u>2</u>	0	2	<u>7</u>
지방교환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u>16</u>	<u>6</u>	<u>1</u>	1		1	<u>7</u>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u>7</u>	<u>4</u>	<u>1</u>	<u>1</u>		<u>1</u>	
9급 소계	<u>5</u>	<u>4</u>	<u>0</u>	<u>0</u>	0	<u>0</u>	<u>1</u>
지방운전원	<u>2</u>	<u>1</u>	<u>0</u>	<u>0</u>			<u>1</u>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u>3</u>	<u>3</u>				<u>0</u>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2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2호(2006.6.5)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9호(2010.2.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2-3공구) 건설공사』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8호(2010.4.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수용재결신청 서류의 열람 및 의견서제출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용재결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2-3공구) 건설공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공고기간 : 2011. 11. 01 ~ 2011. 11. 15.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11. 01 ~ 2011. 11. 15
6. 열람장소 : 인천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전화:032-560-4485)
7. 기 타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청라사업본부(032-560-1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토지 : 붙임 참조

2011. 11.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25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8·9BL)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안)

가. 주요 변경내용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소로3-21호선)폐지 → 8BL에 편입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1	4	특수 도로	129	중로 2-228 호선	중로 3-171 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1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1호선	-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폐지	○가구의 합병에 따른 노선폐지 ○면적 515.4m ² 감소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금곡동 729-11	-	331.0	331.0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면적 : 331m ²	·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및 휴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공지 신설(기부채납)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가구의 합병 : 8·9BL → 8BL

기정		변경		비고
가구번호	면적(m ²)	가구번호	면적(m ²)	
8BL	19,181.0	8BL	30,718.3	· 소로3-21호선(515.4m ²) 8BL에 편입 · 공공공지(331m ²)로 편입(기부채납)
9BL	11,352.9			

- 획지의 변경 :

- 획지 번호 변경 8BL(1~16),9BL(1~12) → 8BL(1~29)
- 획지 면적 감소

기정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 지		가구번호	획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9	11	439.1	8	28	230.1	공공공지(209m ²)기부채납
	12	3,007.4		29	2,885.4	공공공지(122m ²)기부채납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계획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기정>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변경>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단, 가구규모 3만m²이상의 단지는 차량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량진출입 허가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추가 허용

- 식재에 관한 사항

<기정>

-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변경>

-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변은 2열식재를 지양하고 주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이격하여 식재한다.

나. 변경사유

공동주택개발에 있어 지상·지하공간의 공간활용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560-3227)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560-325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